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11. 14 선고 2017가단1955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인서

피 고 1. B

2. C

소송대리인 B

변론 종결 2018. 10. 24.

판결 선고 2018. 11. 14.

주 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D에게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구리등기소 2001. 4.16. 접수 제1029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2005. 8. 30. 변제를 원인으로 한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피고 B은 D의 아들들이고, 피고 C는 피고 B의 처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이 사건 대지', 제2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는 '이 사건 주택'이라 하고, 위 토지와 주택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가 1978. 5.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원고 소유였는데, 1999. 8. 17. 중소기업은행의 신청에 따라 부동산임의경매절차(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 E)가 개시되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1. 4. 16. 같은 해 3. 23.자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하여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라. 원고는 D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단24919호로 '원고가 D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1. 3. 21.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음'의 확인을 구하였고, 위 소송계속 중인 2016. 10. 26.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의 위주장과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이 내려졌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D에 대하여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다.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동생인 피고 B로부터 낙찰자금 6,500만 원을 빌린 후 D의 명의를 빌어 경락받았다. 피고 B은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양도담보 목적으로 자신의 처인 피고 C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피고들이 2001. 4.경부터 2005. 8. 30.경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하면서 위 양도담보의 피담보채권인 6,500만 원을 초과한 임대료 수입을 취득함으로써 위 피담보채권이 모두 변제되었다.

그러므로 원고는 D을 대위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C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3.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등기의무자, 즉 등기부상의 형식상 그 등기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받을 자(등기명의인이거나 그 포괄승계인)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등기의 말소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이다(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3922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B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명의자가 아닌 이상 피고 B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이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소송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가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전소에서 이미 다루어져 이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는 이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음은 물론, 위와 같은 확정판결의 존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3892 판결 등 참조). 한편 말소등기청구사건의 소송물은 당해 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이고 그 동일성 식별의 표준이 되는 청구원인, 즉 말소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은 당해 등기원인의 무효라 할 것으로서 등기원인의 무효를

뒷받침하는 개개의 사유는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여 별개의 청구원인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전소에서 원고가 주장한 사유나 후소에서 주장하는 사유들은 모두 등기의 원인무효를 뒷받침하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할 것일 뿐 그 주장들이 자체로서 별개의 청구원인을 구성한다고 볼 수 없고 모두 전소의 변론종결 전에 발생한 사유라면 전소와 후소는 그 소송물이 동일하여 후소에서의 주장사유들은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1050 판결참조).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합209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C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담보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전제로 주위적으로 피고 C를 상대로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원인으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 B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시가 상당액의 청산금을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소(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으나 2016. 6. 30. 피고 C에 대한 소각하 판결을, 피고 B에 대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를 하였으나 2017. 9. 22.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그 뒤 원고의 상고장이 각하되어 위 판결이 2017. 10. 28.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선행소송 중 피고 C에 대한 청구와 당사자와 소송물이 같고, 원고의 주장도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의 주장과 동일하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 사건 선행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4. 결론

원고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찬